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안내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

실무수습

1. 개 요	1
(1) 수습공인회계사	1
(2) 실무수습 기관 및 지도공인회계사	1
(3) 실무수습 기간	1
(4) 실무과정 연수	2
(5) 실무수습 종료	2
2. 실무수습과정	2
(1) 실무수습과정 FLOW	2
(2) 기본실무과정 수습(1년차)	3
(3) 외부감사실무과정 수습(2년차)	5

II

실무과정 연수

1. 회계연수원	6
(1) 설립	6
(2) 조직	6
(3) 주요 업무	6
2. 실무과정 연수	7
(1) 연수 종류	7
(2) 절차	8
(3) 연수성과(종합평가 시험) 평가	8
(4) 수수료	9

III

관련규정 등

1. 관련 규정 및 서식	10
2. 문의처	10
[첨부 1] 실무수습 기관 현황	11
[첨부 2] 이력서	14
[첨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5
[첨부 4]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16

I

실무수습

1. 개요

공인회계사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적인 지식, 기법 및 직업윤리 등의 실무를 습득하기 위해 정해진 기관에서 최소 1년 이상 최대 3년간 수행해야 하는 과정

(1) 수습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등록을 위해 기본실무 수습과정에 등록된 **합격자(1년차)**
- 외부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감사실무 수습과정에 등록된 **공인회계사(2년차)**

(2) 실무수습 기관 및 지도공인회계사

실무수습 기관	지도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상근임원 또는 감리총괄위원장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전업경력 7년 이상인 이사
감사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무소의 감사반 구성원인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7년 이상 금융감독원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등록 7년 이상 공인회계사로 실무수습에 관한 지도에 동의하여 신고한 자

* 지도공인회계사 : 실무수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수습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http://www.kicpa.or.kr>⇒공시·자료실⇒서식자료⇒수습공인회계사⇒실무수습 기관현황)

(3) 실무수습 기간

- 기본실무 : 공인회계사 등록을 위한 과정으로 1년 이상(「공인회계사법」)
- 외부감사실무 :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감사인에 소속되어 외부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과정으로 실무수습 기관별 1년 또는 2년 이상(「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실무수습기간	실무수습 기관(인정업무)
1년 이상	회계법인 감사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나목)
	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관련업무,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년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별첨 수습 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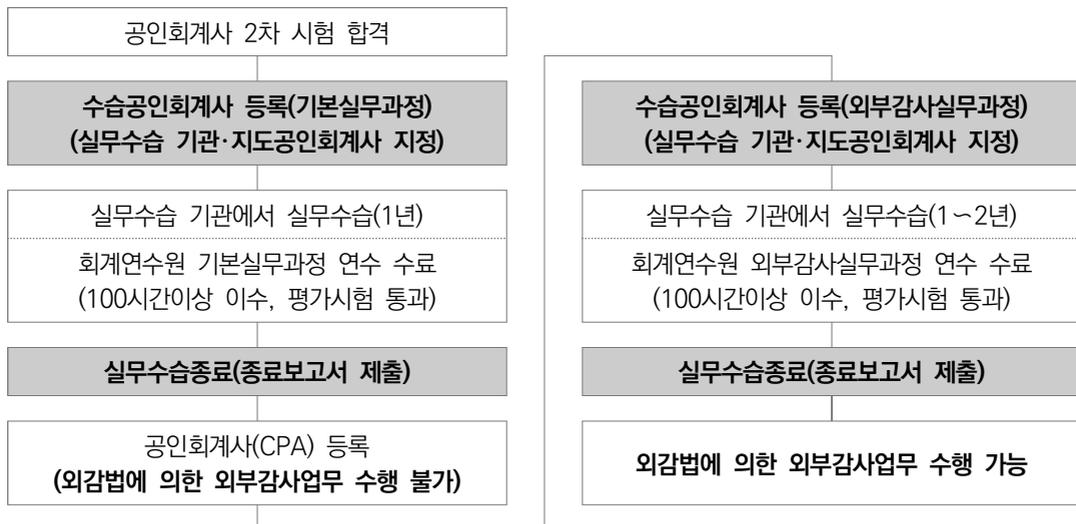
(4) 실무과정 연수 : 전문가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제반능력 향상을 위해 회계연수원(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

- 기본실무과정 : 공인회계사 업무 수행을 위한 과정(공인회계사 등록)
- 외부감사실무과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과정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 업무 수행)

(5) 실무수습 종료 : 실무수습 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실무수습(상시근무) 및 회계연수원의 실무과정 연수를 수료(평가시험 통과)하고, 실무수습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실무과정 종료

2. 실무수습과정

(1) 실무수습과정 FLOW



(2) 기본실무과정 수습(1년차)

가. 등록 : 실무수습 기관(지도공인회계사) 확정 후 신청

- 1) 자격 :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자
- 2) 결격사유(「공인회계사법」 제4조)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등록절차(통합플랫폼을 통한 등록)

1) 등록신청 서류(7종)

- ① 수습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별지 서식)
- ②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증 사본
- ③ 이력서
-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제출서류)
 - 졸업생 및 재학생(1.~3.) : 관련 증명(확인)서
 - 재학생(4.) : 관련 증명서와 실무수습계획서(별지1-1)
- ⑤ 실무수습 기관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 ⑥ 실무수습서약서(별지 2호 서식)
- ⑦ 사진(반명함판 2매)

*제출서류

등록가능 시기	재학생(등록가능 시기 및 제출(확인)서류)	
	재학생	제출서류
1. 졸업 3개월 전	졸업예정증명서	
2.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 완료	졸업학점 이수 증명서 또는 학점이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단과대학장 이상 날인)	
3. 졸업학기 개시 (야간 또는 온라인 수강, 학칙에 따라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는 경우)	① 야간 또는 온라인 수강 확인서 (수강신청증명서 또는 확인서(단과대학장 이상 날인)) ② 학칙에 따라 취업 결석을 공결(公缺)로 인정받은 확인서(단과대학장 이상 날인)등 확인가능 서류)	
4. 휴학 또는 방학기간 ※ 2개월 이상 상시근무 가능한 경우 ※ 휴학·방학기간 종료 시 수습중지	① 휴학 증명서 ② 실무수습계획서(별지1-1서식) ① 학사일정표(방학일정) ② 실무수습계획서(별지1-1서식)	

※ 4. 휴학 또는 방학기간 등록 수습공인회계사 유의사항
: 해당기간 수습은 최대 2회 이며, 수습중지 후 재개 시 「재학생 실무과정 연수」를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다. 실무수습

- 1) 실무수습 개시일 : 수습공인회계사 등록일(신청서 접수일)
- 2) 실무수습 기간 : 1년 이상
- 3) 실무수습 : 실무수습 기관의 정상근무시간에 상근하면서 수습상황보고 및 실무과정 연수이수
 - ① 실무수습상황보고
: 실무수습상황보고서(별지서식) 작성 및 지도공인회계사 확인(검인)을 받아 공인회계사회에 제출
(온라인제출 : 별첨)
 - ② 기본실무과정(회계연수원) 연수 수료 :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
: 100시간 이상 이수 후 종합평가시험 통과
- 4) 실무수습 종료
 - ① 종료 요건
1년 이상의 실무수습(실무수습상황보고서 12개월분 제출)과 회계연수원의 기본실무과정 수료(100시간 이상 이수 및 종합평가시험 통과)
 - ② 종료 신청(종료보고서 제출)
 - 실무수습종료보고서(별지 서식)
 - 지도공인회계사 의견서(별지 서식)
 - 실무수습 기관의 재직(복무) 또는 경력 증명서(근무기간 표기)
 -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수습 받은 전체 기간 표기)
 - ③ 실무수습 종료일 : 실무수습종료보고서 제출일
- 5) 실무수습 등록 취소 : 실무수습 경력 소멸
 - ① 피성년 후견인
 - ② 사망
 - ③ 실무수습 등록 후 5년 이내 실무수습을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 적용 예외 기간(경과연수에서 제외)

 1.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 기간
 2. 병역의무 이행 기간
 3. 출산 및 육아 등을 위한 휴직 기간
 4. 재학생의 휴학·방학기간 종료로 실무수습이 중지된 기간

 - ④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경우
 - ⑤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외부감사실무과정 수습(2년차)

가. 등록 : 실무수습 기관(지도공인회계사) 확정 후 신청

- 1) 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 2) 결격사유 : 「공인회계사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등록절차

- 1) 등록신청 서류(5종)
 - ① 외부감사실무수습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 ②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생략)
 - ③ 이력서
 - ④ 실무수습 기관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 ⑤ 실무수습서약서(별지 2호 서식)

다. 실무수습

- 1) 실무수습 개시일 : 실무수습등록 신청서 접수일
(공인회계사 등록일 이전 서류 제출시 공인회계사 등록일)
- 2) 실무수습 기간 : 1년 또는 2년 이상
- 3) 실무수습 : 기본실무수습과 동일하게 진행
- 4) 실무수습 종료
 - ① 종료 요건
1년 또는 2년 이상의 실무수습(실무수습상황보고서 12개월 또는 24개월분 제출)과 회계연수원의 외부감사실무과정 수료(100시간 이상 이수 및 종합평가시험 통과)
 - ② 종료 신청(종료보고서 제출)
 - 실무수습종료보고서(별지 서식)
 - 지도공인회계사 의견서(별지 서식)
 - 실무수습 기관의 재직(복무) 또는 경력 증명서(근무기간 표기)
 -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수습 받은 전체 기간 표기)
 - ③ 실무수습 종료일 : 실무수습종료보고서 제출일
- 5) 실무수습 등록 취소 : 기본실무과정 수습과 동일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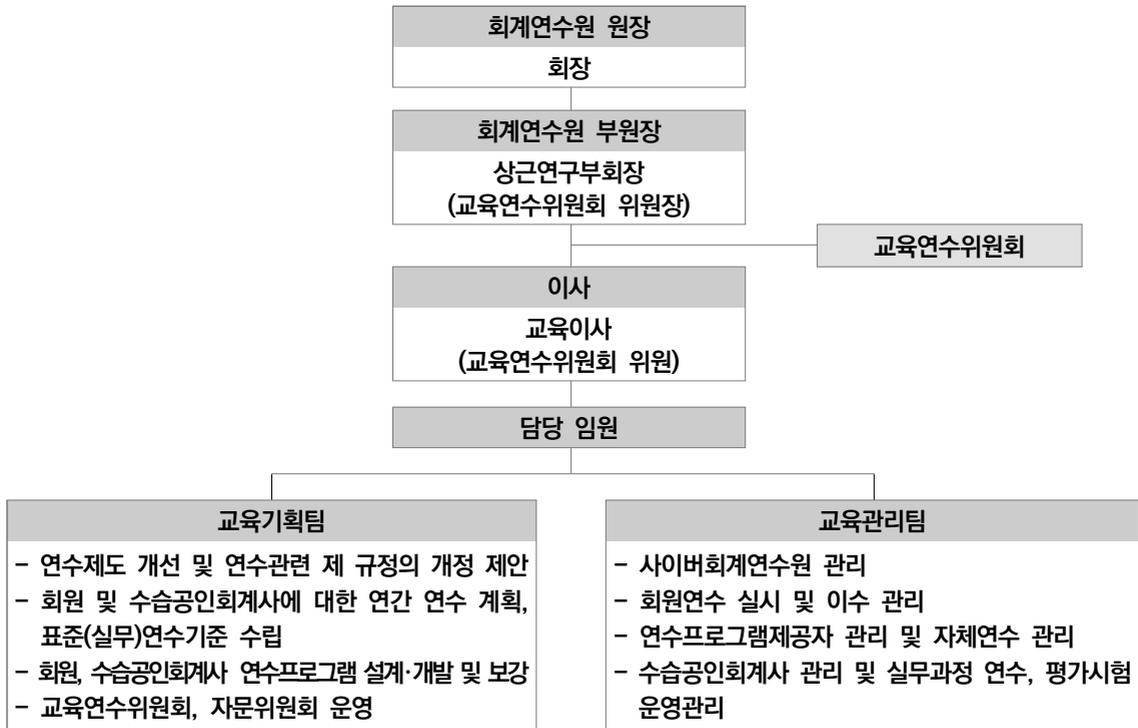
실무과정 연수

1. 회계연수원

(1) 설립

「공인회계사법」 제46조에 따라 회원 및 수습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를 목적으로 설립

(2) 조직



(3) 주요 업무

가. 수습공인회계사 관리

수습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 등록, 변경, 실무수습상황보고서, 실무수습 종료, 실무수습 기관 및 지도공인회계사 관리 등 수습공인회계사 관리 업무

나. 사이버회계연수원(<https://cyber.kicpa.or.kr>) 운영 : 별책

- 1) 표준연수기준에 따른 개업회원 연수프로그램 운영
- 2) 표준실무연수기준에 따른 수습공인회계사 실무과정 연수프로그램 운영

다. 회원연수

개업회원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연수활동을 지도·감독

라. 수습공인회계사 실무과정 연수

「공인회계사법」 제7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습공인회계사의 실무과정 연수 기획 및 관리

2. 실무과정 연수

(1) 연수 종류

가. 기본실무과정 연수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위해 실무수습중인 자에 대한 연수
(대상 :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나. 외부감사실무과정 연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무수습중인 자에 대한 연수
(대상 : 기본실무과정을 종료한 등록 공인회계사)

다. 1988년 이전 합격자 연수

1988년 이전에 시행한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대상 : 1988년 이전 합격자)

라. 재학생 실무과정 연수

휴학 또는 방학기간에 실무수습을 등록한 재학생에 대한 연수

(대상 : 수습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재학생)

(2) 절차

가. 연수신청 : 연수개시 **10일전까지 연수신청서를 회계연수원에 제출하여 신청**

나. 연수실시

연수과정	연수시기	연수 과목	수강방법	수료
기본 실무과정	4월~ 6월[전반기] 9월~11월[후반기]	표준실무연수기준의 분야별 과목 ① 직업윤리 ② 회계 ③ 회계감사 ④ 세무 ⑤ 경영자문 ⑥ 정보기술 ⑦ 기타 능력개발 업무 ⑧ ESG 등	① 회계연수원 교육 (온라인, 집합) 수강 ② 소속된 수습 기관의 승인받은 자체 교육 수강	교육연수위원회결 (10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및 종합평가 시험 통과)
외부감사 실무과정	4월~ 7월[전반기] 9월~12월[후반기]			

(3) 연수성과(종합평가 시험) 평가

연수를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직업윤리와 실무역량으로 구분하여 실시

- 시행시기 : 연수과정 종료 1주 후 토요일
- 시험시간 : 10:00~11:40(총100분)
- 평가
 - 문항수 : 총 100문항(직업윤리 20, 실무역량 80)
 - 실무역량 선택과목 리포트 2건(평가시험 2일 전까지 제출, 실무역량 평가점수에 합산)

(4) 수료

- 연수이수(100시간 이상)와 연수성과 평가(종합평가시험) 결과로 교육연수위원회에서 의결
- 연수시간 미달(100시간 미만)한 경우 : 평가시험 응시불가, 차기과정 재연수
- 연수성과 평가(종합평가시험) 판정 기준
 - ① **직업윤리, 실무역량 합격** : 각 60점 이상 득점
 - ② **직업윤리 불합격, 실무역량 합격** : 차기과정 종합평가 시험의 **직업윤리 재시험** 결과로 최종 합격 여부 판정.
 - ③, ④ **실무역량 불합격** : **차기과정 재연수(종합평가 시험 포함)**

연수이수시간	시험 결과		판 정
	직업윤리	실무역량	
100시간 미만	응시불가	응시불가	차기과정 재연수
100시간 이상	①	합격	수료
	②	불합격	수료 보류(직업윤리 재시험) : 차기과정 직업윤리(연수 면제) 재시험
	③	합격	차기과정 재연수
	④	불합격	차기과정 재연수

Ⅲ

관련 규정 등

1. 관련 규정 및 서식

(1)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별첨4)

(<http://www.kicpa.or.kr> ⇒ 공시·자료실 ⇒ 법규자료 ⇒ 현행법규 ⇒ 회칙 및 내규)

(2) 서식(별첨4)

(<http://www.kicpa.or.kr> ⇒ 공시·자료실 ⇒ 서식자료 ⇒ 수습공인회계사)

〈게시목록〉

- ① 실무수습계획서(재학생 등록자 용)
- ② 실무수습상황보고서
- ③ 수습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④ 외부감사실무수습등록신청서
- ⑤ 수습공인회계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지도공인회계사 의견서
- ⑥ 실무수습종료보고서
- ⑦ 회계연수원 이력서(양식)
- ⑧ 실무수습 기관 현황

2. 문의처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교육관리팀

◆ 수습공인회계사 등록 및 변경, 관련 문의 ☎ 02) 3149-0326

◆ 수습공인회계사 연수 관련 문의 ☎ 02) 3149-0324

[첨부 1]

실 무 수 습 기 관 현 황

(2023. 9. 현재)

I.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1. 회계법인
- 1의2. 감사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나목)
2. 공인회계사회
3. 금융감독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관련업무,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 기타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II.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관”

공인회계사실무수습 기관지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4호(2004. 4. 3)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실무수습을 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다만, 기업회계·정부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한 조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다만, 회계감사·감찰·심사결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3.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청.** 다만, 회계·세무관련 경제사건에 대한 수사 및 지원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다만,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지방세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5. **정부가 출자한 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회사.** 다만,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7.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여신·심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인수관련 업무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8.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은행법에 의한 은행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다만, 기업여신·조사·분석·심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다만, 기업여신·조사·분석·심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0.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만, 전임으로서 회계학에 대한 교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국군장교.** 다만,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다만, 부모은행의 재무상황 및 기업의 경영상황 분석업무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 다만, 유가증권의 상장심사,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4.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보험료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다만, 순보험료율의 산출 및 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허가한 신용평가회사.** 다만, 기업 및 유가증권의 신용평가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다만,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7.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상장회사협의회.** 다만, 기업회계,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8. **금융감독위원회의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회계연구원.** 다만, 회계관련연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9.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 다만, 증권회사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유가증권의 등록(지정)심사, 협회등록법인 및 제3시장 지정법인의 재무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 다만, 재무제표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1.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다만, 재무제표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및 검증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다만, 위탁받은 회사의 사업분석, 심사업무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다만, 기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5.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 다만,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리스크관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6. **기업분석·평가업무 및 기업인수합병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컨설팅회사.** 다만, 기업에 대한 기업분석·평가업무 및 기업인수합병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다만,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8.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협회,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재정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코스닥등록협회의회, 은행연합회 및 종합금융협회. 다만,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다만, 기금의 조달·운영·관리업무 및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융자와 관련한 조사·분석·심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도입관련 조사·연구업무 및 재정분석·진단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31.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다만, 투자기관에 대한 여신·심사·분석 및 평가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32.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다만,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부칙(2004. 4.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2]

이 력 서

사진
(3cm×4cm)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 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 학 력 】					
년 월 일	고등학교 졸업				
년 월 일	대학교	과 졸업(학년 학기 재학)	(졸업예정	년	월)
년 월 일	대학원	과 졸업·수료(학기 재학)	(졸업예정	년	월)
년 월 일					
【 주요경력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주요자격 및 특기사항(어학등) 】					
년 월 일					
년 월 일					
【 병 력 】					
군필·미필	• 군필자 계급 :		• 병과(특기) :		
	• 입대일 :		• 전역일 :		
면제사유					
【 가 족 관 계 】					
관계	성명	출생연도	관계	성명	출생연도

[첨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성 명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e-mail	
주 소			
소 속		전화번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p>○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및 수습공인회계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으며,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공인회계사 및 수습공인회계사의 사이버교육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제공과 기타 통신연락 수단으로 이용됩니다.</p> <p style="margin-left: 20px;">- 수집 및 이용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전자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p> <p>○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동안은 본회에서 계속 보유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px;">다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퇴회한 경우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p>			
<p>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동의일 : . . . 동의인 : (서명 또는 인)</p>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p>○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수습공인회계사의 수습연수와 공인회계사의 연수를 위해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사이버연수 전문업체에 사이버교육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습공인회계사와 공인회계사의 사이버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사이버교육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요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px;">-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패스워드, 휴대폰번호, 전자메일 등 사이버 교육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p> <p>○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공인회계사회 퇴회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p>			
<p>본인은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에 대해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동의일 : . . . 동의인 : (서명 또는 인)</p>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하

[첨부 4]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한공회 내규 제 46 호
제 정 1990. 11. 1
최 종 개 정 2022. 4.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6조에 따른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등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2.]

제2조(실무수습) ① 실무수습은 공인회계사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적인 지식, 기법 및 직업윤리 등을 습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7. 2.>

② 실무수습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기관(이하 “실무수습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실무수습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이하 “회계연수원”이라 한다)에서의 연수로 한다. <개정 2021. 7. 2.>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무수습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회계연수원에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등록을 위한 별도의 실무수습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

④ 제3항에 따른 실무수습과정의 내용·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계연수원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21. 7. 2.>

⑤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무수습 중에 있는 사람(이하 “수습공인회계사”라 한다)은 회계연수원의 연수기간을 제외하고 실무수습 기관의 정상근무시간에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

[전문개정 2004. 6. 15.]

제3조(실무수습 기관) 실무수습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

1.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이 회”라 한다) <개정 2021. 7. 2.>
2. 회계법인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른 감사반 <개정 2021. 7. 2.>
4. 금융감독원. 다만,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관련 업무,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2. 14., 2021. 7. 2.>

5.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 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개정 2017. 12. 14., 2021. 7. 2.>

[전문개정 2004. 6. 15.]

제4조(실무수습의 기간) ①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무수습 기관(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습과정을 포함한다)에서 1년 이상 실무수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외부감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기간의 산정은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기간을 포함하되, 그 인정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 4. 13.>

1.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습 기관은 실무수습기간 2년 이상
2. 제3조제5호의 수습 기관은 실무수습기간 3년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무수습 중인 사람이 실무수습 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수행한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제3조제5호의 실무수습 기관에서 수행한 실무수습기간은 3분의 2로 하여 합산한다.

[전문개정 2021. 7. 2.]

제5조(등록) ①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으로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실무수습 기관(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습과정을 포함한다)을 정한 후 이 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7., 2004. 6. 15., 2021. 7. 2., 2022. 4. 1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습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

1. 영 제8조에 따른 합격증서 사본 <개정 2021. 7. 2.>
2. 이력서
3.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 <개정 2018. 4. 13., 2021. 7. 2.>
4. 실무수습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직(복무) 또는 경력증명서(실무수습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습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4. 6. 15., 2021. 7. 2.>
5. 실무수습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③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외부감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 기관을 정한 후 회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 15., 개정 2021. 7. 2.〉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부감사실무수습등록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 15., 개정 2021. 7. 2.〉

1.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2. 이력서
3. 실무수습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직(복무) 또는 경력증명서(실무수습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실무수습서약서

⑤ 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지체 없이 수습공인회계사등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한다. 〈개정 2004. 6. 15., 2021. 7. 2.〉

⑥ 수습공인회계사는 실무수습 기관 또는 지도공인회계사의 변경, 실무수습의 중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수습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5., 2021. 7. 2.〉

제6조(등록거부) ① 회장은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5., 2021. 7. 2.〉

1. 피성년후견인
2. 실무수습 기관 외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실무수습등록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1. 9. 11., 2004. 6. 15., 2018. 4. 13., 2021. 7. 2., 2022. 4. 15.〉
 - 가. 졸업예정학기의 말일(매년 2월말 또는 8월말)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속하는 경우(이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
 - 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이 경우 수료증명서 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확인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
 - 다. 졸업예정학기를 야간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경우(이 경우 수강신청증명서 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확인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
 - 라. 졸업예정학기를 학칙에 따라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공결(公缺)로 인정받은 경우(이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의 확인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
 - 마. 휴학 또는 학사 일정에 따른 방학으로 2개월 이상 실무수습 기관의 정상근무시간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경우(이 경우 휴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학교의 학사일정 및 실무수습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전문개정 2018. 4. 13.]

3.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에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빠뜨린 경우 <개정 2004. 6. 15., 2021. 7. 2.>
-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

제7조(등록취소) ① 회장은 수습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

1. 피성년후견인
2. 사망한 경우
3. 수습공인회계사등록 또는 외부감사실무수습등록 후 각각 5년 이내(제14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습중지 기간은 제외한다)에 실무수습을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4. 6. 15., 2021. 7. 2.>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개정 2021. 7. 2.>
5.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 7. 2.>
- ② 회장은 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취소 전에 실무수습을 받은 기간은 제4조에 따른 실무수습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2.>

제8조(실무수습의 개시) ① 실무수습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날부터 개시한다.

-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의 실무수습은 다시 등록을 한 날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4. 6. 15.>

제9조(지도공인회계사) ① 수습공인회계사는 실무수습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수행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도공인회계사로 하여 실무수습에 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

1. 이 회(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하는 상근임원 또는 감리총괄위원장 <개정 2004. 6. 15., 2017. 12. 14., 2021. 7. 2., 2022. 4. 15.>
2.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전업경력 7년이상인 이사 <개정 2004.

6. 15.)

3. 외부감사법에 의한 감사반의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무소의 감사반 구성원인 공인회계사 <신설 2003. 6. 27., 개정 2004. 6. 15.>
4.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로서 7년이상 당해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행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 후 7년 이상인 자로서 실무수습에 관한 지도에 동의하여 신고한 자 <개정 2003. 6. 27., 2004. 6. 15., 2018. 4. 13.>
 - ② 회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공인회계사를 지정한 경우 당해 수습공인회계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7., 2004. 6. 15., 2017. 12. 14.>
 - ③ 회장은 실무수습 기관을 정한 자의 지도공인회계사에게 실무수습지도위촉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5.>
 - ④ 지도공인회계사는 수습공인회계사를 지도함에 있어 성실·공정해야 하며, 수습공인회계사가 원만하게 수습과정을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수습상황보고) 수습공인회계사는 매월 실무수습상황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도공인회계사의 검인을 받아 매 분기 종료후 14일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정에 참여한 자의 참여기간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4. 6. 15.>

제11조(회계연수원 연수) ① 수습공인회계사는 제4조에 따른 실무수습기간 중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연수원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본실무과정 연수 100시간 이상 <개정 2021. 7. 2.>
2. 외부감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외부감사실무과정 연수 100시간 이상 <개정 2004. 6. 15., 2021. 7. 2.>
3. 제1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실무수습을 중지한 수습공인회계사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습을 개시한 경우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추가 연수 10시간 이상 <개정 2022. 4. 15.>
 - ② 수습공인회계사가 회계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회계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라 연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
 - ③ 수습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른 회계연수원의 연수과정은 기본실무과정과 외부감사실무과정을 연차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이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5., 2021. 7. 2.>
 - ④ 회계연수원은 수습공인회계사의 연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
 - ⑤ 회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제4항에 따른 시험에 통과하여 회계연수원의

실무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수료증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발급한다. <개정 2004. 6. 15., 2018. 4. 13., 2021. 7. 2.>

⑥ 제2항에 따라 연수신청을 한 수습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이 회가 정하는 연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 2022. 4. 15.>

⑦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습공인회계사의 회계연수원 연수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7. 2.>

제12조(실무수습의 종료) ① 수습공인회계사는 실무수습기간이 종료되면 공인회계사(외부감사)실무수습 종료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정에 참여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6. 15.>

1. 지도공인회계사의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
 2. 실무수습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직(복무) 또는 경력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01. 9. 11., 2004. 6. 15.>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 ② 수습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종료일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종료보고서가 이 회에 접수된 날로 한다.

제13조(감독) ① 회장은 수습공인회계사에게 실무수습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위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수습공인회계사의 수습상황 및 출결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이 회 임원으로 하여금 수습상황을 점검 또는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도공인회계사는 수습공인회계사가 실무수습기간중에 수습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수습공인회계사로서 품위를 실추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습공인회계사는 지도공인회계사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실무수습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실무수습의 정지 등) ① 회장은 수습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회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무수습의 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

1.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 7. 2.>
2. 수습공인회계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개정 2004. 6. 15., 2021. 7. 2.>

3. 이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7. 2.>

② 지도공인회계사는 수습공인회계사가 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이 정지된 경우 실무수습정지 이전까지의 실무수습상황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

③ 수습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실무수습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실무수습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 2022. 4. 15.>

1.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병역의무 이행

3. 출산 및 육아 등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제2호마목의 예외에 해당하는 수습공인회계사로서 실무수습 기관의 근무가 종료되거나 휴학·방학기간이 종료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중지하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제5조제6항에 따른 수습공인회계사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5., 2021. 7. 2.>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실무수습이 정지되거나 중지된 사람이 다시 실무수습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습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개시 내용을 기재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수습공인회계사로서 휴학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방학기간중 다시 실무수습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학교의 학사일정 및 실무수습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 2022. 4. 15.>

⑥ 휴학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방학기간 중 제5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개시는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2. 4. 15.>

⑦ 수습공인회계사가 실무수습의 정지 또는 중지 전에 실무수습한 기간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2.>

⑧ 수습공인회계사가 실무수습기간 중에 실무수습 기관(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습과정을 포함한다)에서 30일 이상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실무수습기간에 결근일수를 더하여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 6. 15., 2021. 7. 2.>

제15조(실무수습종료증명) ① 회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모두 이수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종료보고를 이행한 수습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외부감사)실무수습종료증(별지 제10호 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04. 6. 15.>

②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외부감사)실무수습종료증으로 한다. <개정 2004. 6. 15., 2017. 12. 14., 2021. 7. 2.>

제1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시보등록부에 등록된 자의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당시 실무수습기간이 1년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수원의 연수과정을 80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시보수습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4. 7. 27.)

- ① 이 규정은 1994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등록한 수습공인회계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수습기간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정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2427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 개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3조제4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기관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일이후 3월까지의 근무기간을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수원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200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1. 합격증서 사본
2. 당해 실무수습 기관의 정관 및 직제규정(국군장교를 제외한다)
3. 당해 실무수습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직(복무) 또는 경력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국군장교를 제외한다)
5. 갑근세납세필증명서(국군장교를 제외한다)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부 칙 (1999.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수습기간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정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2427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 개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기관에 재직(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직무와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1997년 11월 27일에 개정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합격이전의 재직기간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수원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200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1. 합격증서 사본
2. 당해 실무수습 기관의 정관 및 직제규정(국군장교를 제외한다)
3. 당해 실무수습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직(복무) 또는 경력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국군장교를 제외한다)
5. 갑근세납세필증명서(국군장교를 제외한다)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부 칙 (1999.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수습기간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정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2427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 개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3조제18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기관에 재직(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재직기간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수원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200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1. 합격증서 사본
2. 당해 실무수습 기관의 정관 및 직제규정
3. 당해 실무수습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
5. 갑근세납세필증명서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부 칙 (2001.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수습기간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정 시행당시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반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6846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 개정령의 규정에 따라 2000년 6월 23일 이후에 재직한 기간은 제4조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3.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및 실무수습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무수습기간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2427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 개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기관에 재직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재직기간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수원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200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04.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수습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실무수습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18352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이전에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실무수습을 등록한 후 실무수습을 받은 기간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② 1999년 8월 10일에 개정된 부칙 제2조, 1999년 12월 17일에 개정된 부칙 제2조 및 2003년 6월 27일에 개정된 부칙 제3조는 삭제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당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문의 종전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의 적용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합격자부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습공인회계사등록 또는 외부감사실무수습등록한 이후부터를 실무수습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계연수원 연수시간인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수원의 1년차 연수를 이수한 수습공인회계사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실무 과정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2년차 연수를 이수한 수습공인회계사는 동조동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실무과정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수습공인회계사등록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에 따른 실무수습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무수습등록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5년 내의 수습종료기한이 경과한 사람은 제외한다.

부 칙 (2022. 4.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날(2022. 4. 1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2. 4. 15>

실무수습계획서

신 청 인	성 명	홍 길 동	등록번호	2XXXX
실 무 수 습 기 관	OO회계법인			
실 무 수 습 예 정 기 간	2023년 1월 2일 ~ 2023년 2월 24일			
실무수습 계획 및 일정				
해당분야	수행예정업무		기간	
회계감사	회사의 이해 및 위험의 예비적 평가		1주차(1.2.~1.6.)	
"	내부통제구조의 파악		2주차(1.9.~1.13.)	
세무관련	장단기 세무계획의 수립		3주차(1.16.~1.20.)	
"	세무실사에 대비한 사전검토		4주차(1.25.~1.27.)	
경영자문 등	조직개발 및 조직문화구축		5주차(1.30.~2.3.)	
"	기업평가자문		6주차(2.3.~2.10.)	
기타			7주차(2.13.~2.17.)	
"			8주차(2.20.~2.24.)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실무수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상기 신청인의 실무수습예정기간에 대한 실무수습 계획 및 일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지도공인회계사 : (인)

작성요령 : 1. 등록번호는 수습등록번호(중지 후 재개시만 기재)
2. 예정기간은 2개월 이상 인정(월 단위)

(크기 : 가로210mm×세로297mm)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4. 6. 15>

(앞 면)						
등 록 번 호	수습공인회계사 등록부					
성 명	(한글)				사 진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TEL)					
최 종 출 신 학 교						
제 2 차 시 험 합 격	년 도 제 회 합 격 증 서 제 호					
구 분	공인회계사실무수습 등록			외부감사실무수습 등록		
등 록 일						
실 무 수 습 기 관						
지 도 공 인 회 계 사						
수 습 종 료 일						
등 록 취 소 일						
등 록 취 소 사 유						
등 록 사 항 변 경	변경일자	실무수습 기관	지도공인회계사	변경일자	실무수습 기관	지도공인회계사
비 고						

(크기 : 가로210mm×세로297mm)

(뒷 면)							
회계연수원 연 수	제 기 연수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제 기 연수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제 기 연수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제 기 연수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회계연수원 종합평가							
구 분		기업회계	회계감사	세 법	경영평가	총 점	평 균
기본 실무 과정 연수	본시험						
	재시험						
외부감사 실무과정 연수	본시험						
	재시험						
실무수습 상 황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외부감사 실무수습	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실무수습 종료증 발급	구 분	발급일자	용 도	매 수	발급자인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외부감사 실무수습						

(크기 : 가로210mm×세로297mm)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4. 6. 15>

수습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수습공인회계사등록번호		제 호	
성 명			
변경 내용	발 생 일	년 월 일	
	내 용	변경전	
		변경후	
	사 유		
확 인		지도공인회계사 (인)	
<p>실무수습에관한규정 제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하</p>			
<p>첨부서류 :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실무수습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직(복무) 또는 경력증명서 (실무수습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지도공인회계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지도공인회계사의 의견서</p>			

(크기 : 가로210mm×세로297mm)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4. 6. 15>

실무수습지도 위촉서

지도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등록번호 : 제 호

실무수습에관한규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아래의 수습공인회계사에 대한 실무수습 지도를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수습공인회계사등록번호		제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TEL)		
실무수습 기관			
이 력 의 개 요			
년 월 일	고등학교 졸업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과 졸업
년 월 일	제 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합격 (합격증서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습공인회계사 등록		

(크기 : 가로210mm×세로297mm)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4. 6. 15>

(앞 면)

20 년 월 실무수습상황보고서 (회계감사 업무)

수 습 공 인 회 계 사	성 명		등록번호	
실 무 수 습 기 관				
고객회사명	수행업무	실시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기 간
근 태 상 황	출근할일수		출근일수	결근일수

본인은 실무수습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습공인회계사 : (인)

상기 수습공인회계사가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도공인회계사 : (인)

- 작성요령 : 1. 고객회사명은 회계감사회사를 말함.
2. 수행업무는 (뒷면)의 해당업무 코드를 기재함.
3. 실시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함.

(크기 : 가로210mm×세로297mm)

		(뒷 면)
업무분야	수행업무	비 고
AU.1 감사계획수립	AU.1.01 전반감사계획수립	
	AU.1.02 회사의 이해 및 위험의 예비적 평가	
	AU.1.03 세부감사계획의 수립	
	AU.1.99 기 타	
AU.2 내부통제의 검토	AU.2.01 내부통제구조의 파악	
	AU.2.02 내부통제구조의 유효성 검증	
	AU.2.03 내부통제구조에 대한 최종평가	
	AU.2.99 기 타	
AU.3 계정과목별 입증감사	AU.3.01 장·단기 금융상품조회 확인	
	AU.3.02 현금 및 현금등가물 실물확인	
	AU.3.03 매출채권(장기성 포함)잔액조회 확인	
	AU.3.04 매출채권 연령분석	
	AU.3.05 유가증권 실물확인 및 평가	
	AU.3.06 장·단기대여금 조회확인	
	AU.3.07 재고자산 실물확인 및 입회확인	
	AU.3.08 재고자산평가	
	AU.3.09 cut-off 테스트	
	AU.3.10 투자유가증권 실사 및 평가	
	AU.3.11 유형자산 실물확인, 문서검증	
	AU.3.12 무형자산 문서검증	
	AU.3.13 매입채무 문서검증, 조회확인	
	AU.3.14 장·단기차입금 조회확인	
	AU.3.15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검증	
	AU.3.16 매출액 변동 테스트	
	AU.3.17 매출액 cut-off 테스트	
	AU.3.18 매출원가계산	
	AU.3.19 주당순이익 등 계산검증	
	AU.3.20 이연법인세차·대, 법인세비용 계산검증	
AU.3.99 기 타		
AU.4 기타의 감사절차	AU.4.01 특수 관계자 간의 채권·채무 실재성 확인	
	AU.4.02 채무보증에 대한 조회확인	
	AU.4.03 이사회이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열람	
	AU.4.04 변호사 조회서 발송회수	
	AU.4.05 우발채무의 검토	
	AU.4.06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 검토	
	AU.4.99 기 타	
AU.5 감사종료절차	AU.5.01 감사조서의 검토	
	AU.5.02 감사보고서 작성 및 심리	
	AU.5.99 기 타	

(크기 : 가로210mm×세로297mm)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4. 6. 15>

(앞 면)

20 년 월 실무수습상황보고서 (세무관련 업무)

수 습 공 인 회 계 사	성 명		등록번호	
실 무 수 습 기 관				
고객회사명	수행업무	실시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기 간
근 태 상 황	출근할일수		출근일수	결근일수

본인은 실무수습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습공인회계사 : (인)

상기 수습공인회계사가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도공인회계사 : (인)

- 작성요령 : 1. 고객회사가 본인이 소속된 실무수습 기관일 경우는 소속기관명을 기재함.
 2. 수행업무는 (뒷면)의 해당업무 코드를 기재함.
 3. 실시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함.

(크기 : 가로210mm×세로297mm)

(뒷 면)		
업무분야	수행업무	비 고
TA.1 세무신고대리 및 자문	TA.1.01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증명	
	TA.1.02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TA.1.03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TA.1.04 상속세 신고대리	
	TA.1.05 부동산 등 재산세제 신고대리	
	TA.1.99 기 타	
TA.2 세무계획 수립	TA.2.01 장단기 세무계획의 수립	
	TA.2.02 기업의 결산대책, 조세절감방안 수립	
	TA.2.03 특정거래, 계약 등에 따른 세무문제 검토	
	TA.2.99 기 타	
TA.3 세무분쟁 해결	TA.3.01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청구 대행	
	TA.3.02 세무감사의 보조	
	TA.3.03 세무실사에 대비한 사전검토	
	TA.3.99 기 타	
TA.4 회사의 설립, 합병, 분할관련 세무	TA.4.01 회사의 설립관련 세무계획 및 대책수립	
	TA.4.02 기업합병 관련한 세무문제의 사전검토	
	TA.4.03 기업분할 관련한 세무문제의 사전검토	
	TA.4.99 기 타	
TA.5 국제조세 관련업무	TA.5.01 이전가격세제자문	
	TA.5.02 Anti-Dumping 세제자문	
	TA.5.03 고정사업장에 대한 자문	
	TA.5.04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관련 세무	
	TA.5.05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과 관련한 세무자문	
	TA.5.06 합작투자과 기술도입에 관련한 자문	
	TA.5.07 감면인가신청신고대리	
	TA.5.08 외자도입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관련된 자문	
	TA.5.99 기 타	

(크기 : 가로210mm×세로297mm)

(뒷 면)		
업무분야	수행업무	비 고
MA.1 전략수립 및 경영혁신 컨설팅	MA.1.01 비전과 기업전략수립	
	MA.1.02 지식경영	
	MA.1.03 전략적 기업경영	
	MA.1.04 고객관계관리(CRM)	
	MA.1.05 공급사슬관리(SCM)	
	MA.1.99 기 타	
MA.2 재무지원컨설팅	MA.2.01 기업구조조정업무	
	MA.2.02 재무자문업무	
	MA.2.03 프로젝트금융과 민영화지원	
	MA.2.04 기업평가자문	
	MA.2.05 분쟁조사 분석업무	
	MA.2.06 부동산 투자자문업무	
	MA.2.07 위험관리	
MA.2.99 기 타		
MA.3 인사조직 컨설팅	MA.3.01 조직설계와 구조조정	
	MA.3.02 조직개발 및 조직문화구축	
	MA.3.03 성과시스템구축 및 개발컨설팅	
	MA.3.04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MA.3.05 기타 전략적 인사조직 컨설팅	
MA.3.99 기타		
MA.4 IT컨설팅	MA.4.01 정보기술컨설팅	
	MA.4.02 정보시스템 전략수립	
	MA.4.03 업무영속성관리	
	MA.4.04 IT경영실태예비평가	
	MA.4.05 IT위험관리 및 벤치마킹	
	MA.4.99 기타	
MA.5 기 타	MA.5.01 내부감사지원	
	MA.5.02 벤처기업지원	
	MA.5.03 국제통상업무지원	
	MA.5.04 재무상태 기업진단 (건설업, 정보통신업, 전기공사업, 의약품도매상 등)	
	MA.5.05 원가계산	
	MA.5.06 재무 분석	
	MA.5.07 기장 및 결산대리	
	MA.5.99 기타	

(크기 : 가로210mm×세로297mm)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4. 6. 15>

(앞 면)

20 년 월 실무수습상황보고서
(감사인 외 기타실무수습 기관)

수 습 공 인 회 계 사	성 명	등록번호	
실 무 수 습 기 관			
고객회사명	수행업무	실시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기 간
근 태 상 황	출근할일수	출근일수	결근일수

본인은 실무수습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습공인회계사 : (인)

상기 수습공인회계사가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도공인회계사 : (인)

- 작성요령 : 1. 고객회사가 본인이 소속된 실무수습 기관일 경우는 소속기관명을 기재함.
2. 수행업무는 해당업무를 기재함.
3. 실시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함.

(크기 : 가로210mm×세로297mm)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04. 6. 15., 2021. 7. 2.>

지도공인회계사 의견서					
수습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성 명			
실무수습 기관					
지 도 기 간	년	월	일	부 터	일
	년	월	일	까 지	
평가항목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부 족
업무처리능력					
전문적 지식수준 및 연구의욕					
업무관련 커뮤니케이션 능력					
회계사로서의 품위 (인품)					
총 평					
			년	월	일
			지도공인회계사		(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귀하					

(크기 : 가로 210mm × 세로 297mm)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04. 6. 15>

제 호

공 인 회 계 사
 외 부 감 사

실무수습종료증

수습공인회계사

등 록 번 호 : 제 호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위의 수습공인회계사는 다음과 같이 소정의 실무수습을 종료하였음을 실무수습에관한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합니다.

- 다 음 -

실무수습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실무수습 기관 :

지도공인회계사 :

년 월 일

한국공인회계사회장